

원주시 감사관 (개방형직위) 채용 공고

원주시에서는 개방형직위의 「감사관」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6년 9월 14일

원주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 개요

가. 개 요

임용분야	임용직급	임용인원	임용기간	직무내용
감사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일반임기제공무원 (개방형 5호)	1명	2년 *	- 자체 감사계획 수립 및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 - 공무원 부정·비위행위 조사 및 예방 -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 업무 - 일상감사, 특명조사, 공직자 문책(징계) - 상부·자체 감사결과 처리 - 주민감사청구제 운영 - 공직자윤리위원회 및 고충처리위원회 운영 - 기타 감사 업무 관련 직무 등

* 임용기간 근무실적에 따라 총 5년 범위 내에서 근무기간 연장 가능

나. 임용신분

- 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으로서 전보, 승진, 전직 등을 통해 해당 직위에 임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
-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채용계약을 통해 해당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고, 근무기간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임기제공무원 신분 유지

다. 관련법령

- 지방공무원법
- 지방공무원 임용령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지침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2

응시요건 (기준일: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가. 공통요건

- 국 적: 대한민국
- 응시연령: 18세 이상
- 지역·성별: 제한 없음(단,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5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 행위자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 당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5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될 수 없다.

1.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려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정직 이상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3년(파면 또는 문책에 따른 퇴직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정직 미만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 ②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밝혀지면 그 직에서 교체된다.
-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주요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

나. 경력요건: 아래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1.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수사·법무, 예산·회계, 조사·기획·평가 등의 업무(이하 이 조에서 “감사 관련 업무”라 한다)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감사 관련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공공기관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제4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공공 또는 민간연구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그 밖에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에 따라 기술·보건·세무 또는 환경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상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사 관련 업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1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려는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와 관련된 「공무원임용시행령」 별표 7 및 별표 8에 따른 5급 경력경쟁채용등의 대상 자격증과 경력기준을 갖춘 사람

나.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려는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와 관련된 자치법규에 따른 5급 공무원의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임용대상 자격증과 경력기준을 갖춘 사람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하고 기술·보건·세무 또는 환경 등의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할 당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

3. 중앙행정기관 외의 국가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려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3 근무조건 및 보수

가. 근무조건

- 근무기간: 최초 2년 * 근무실적 및 필요성 등 기관 사정에 따라 최대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여부 결정
- 기본 근무시간: 주 40시간 / 5일
- 복 무: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원주시 공무원 복무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름
- 보험 가입
 - 건강보험 및 공무원연금 **의무가입 대상**
 - 고용보험 당사자 희망 시 가입(단,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함)

나. 보 수

- 경력직 공무원으로 임용 시
 - －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 시
 - － 개방형5호의 연봉한계액(53,316천원 ~ 93,801천원) 범위 내에서 정하되, 채용 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 고려하여 결정
- ※ 수당은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등에 따라 지급함

4 시 험 방 법

가. 1차 서류전형: 2026. 10. 8.[목] 합격자 발표 예정

- 채용예정 직위의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형식요건 심사
-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8배수 이상인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예정 인원의 7배수까지 선발할 수 있음

나. 2차 면접시험: 2026. 10. 13.[화] 예정

-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적격성 심사
- 심사내용

능 력 요 건	하 부 요 소
전문가적 능력	◦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 새로운 지식 및 정보의 수집·분석 능력 ◦ 종합적 판단력 및 정책결정 능력
전략적 리더십	◦ 비전제시 및 혁신지향 능력 ◦ 전략적 사고 및 전략수립 능력 ◦ 유연하고 전향적인 자세를 견지하는 능력
변화관리능력	◦ 문제에 대한 사전예측과 예방조치 능력 ◦ 문제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능력 ◦ 고객지향성 및 새로운 사고방식의 전파 능력
조직관리능력	◦ 팀워크 형성 및 목표공유 능력 ◦ 업무개선능력 ◦ 자원활용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 대국민 공감대 형성 능력 ◦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 ◦ 효과적인 협상 및 설득 능력

가. 공고 및 응시원서 접수

- 시험공고: 2026. 9. 14.(월) ~ 2026. 9. 27.(일)
- 원서접수: 2026. 9. 28.(월) ~ 2026. 10. 2.(금)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만 접수, 마감 후 추가·수정접수 불가]
- 접수방법: 방문 혹은 등기우편 접수

【방문 접수】

- 접 수 처: 원주시청 2층 총무과 인사팀 (대리접수 가능)
- 접수시간: 평일 09:00~18:00 (11:30~13:00 제외)
- 접수 전 시청 1층 민원과(6·7번창구)에서 응시수수료 수입증지 납부 후 접수
 - ※ 응시수수료: 10,000원
 - ※ 수입증지 납부 전 응시자 본인이 응시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 필수

【등기우편 접수】

- 주 소 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시청로 1, 총무과 인사팀 채용담당자(무실동, 원주시청)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마감일 빠른 등기 소인분에 한함(택배·퀵서비스 등은 접수 불가)
- 채용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응시번호 확인 필수(☎ 033-737-2224)
- 응시수수료(1만원)는 우체국 통상환증서(소액환)으로 교환하여 동봉
 - ※ 통상환증서 받을 분 기재란은 작성하지 않고 공란으로 기재하여 교환
 - ※ 우편접수자의 응시표는 서류전형합격자 대상으로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예정

나. 면접대상자 공고: 2026. 10. 8.[목] 예정

다. 면접 시험일: 2026. 10. 13.[화] 예정

라. 최종합격자 발표: 2026. 10월 중

마. 임용(예정)일: 2026. 11월 중

※ 유의사항

- 상기 일정은 변동가능한 예정일이며, 확정 일정은 추후 게시될 「서류합격자 및 면접시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일정은 개별통보하지 않으며 원주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원주시청 홈페이지 > 원주소식 > 시험정보 > 서류합격자 및 면접시험 공고
 - ▷ 전화, 문자 등으로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개인 확인 필수
 - ▷ 원서 접수 현황, 면접위원 섭외 지연 등 부득이하게 이미 고시된 일정이 변경 되는 경우엔 응시자 또는 합격자에 한해 개별 연락 예정

【하단 제출서류는 스테이플러 등 사용 없이 순서대로 제출】

가. 응시원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 응시 수수료: 10,000원
 - ※ 원주시 수입증지형태로 납부해야함, 정부수입인지 사용불가
- 수 입 증 지: 원주시청 1층 민원과(6번 또는 7번 창구)
 - ※ 우편접수의 경우 우체국 통상환증서(소액환) 동봉하여 발송 (정부수입인지 불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는 응시수수료 면제 (해당되는 경우 수입증지 대신 별도 증명서 첨부)

나. 이력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필수 / 증빙자료 없을 시 기재 금지
-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 기재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
- 첨부된 증빙자료 중 임용분야별 임용 자격기준에 해당되는 경력만 인정

다.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라. 직무수행 계획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 자유롭게 기술하되, 임용예정직위 담당업무에 대한 추진계획(전략)·방법 등이 포함되도록 기술

마.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참조]

- 증빙자료(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가 첨부되지 않은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필수 기재사항 ※ 미기재 시 증빙자료로 불인정할 수 있음
 - 근무기간*(주당 근무시간 포함), 직위(급), 담당업무 누락 금지
 - 발급기관 담당자 정보(소속, 직위, 성명, 연락처)를 기재하며, 발급기관 관인 날인

*근무기간

- 종일근무(주40시간) 시, 경력 전부 인정
- 종일근무가 아닐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근무기간 산출
ex) 2년간 주20시간 경력 → 1년으로 인정
- 비상근, 프리랜서 등의 경우 주당 근무시간 입증할 자료 제출

- ※ 기존 근무하던 기관에서 발급해주는 경력증명서에 필수 기재요소가 누락된 경우, 응시자 제출 서식 별지 제5호 경력증명서 서식 작성하여 제출

- ※ 제출한 경력증명서에 담당업무, 근무시간 등이 누락된 경우 경력 산출 불가
- 증빙자료는 시험공고일 기준 1년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하여 인정

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 내역서 1부

- 경력 확인용으로 근무기관과 이력이 동일해야 함
- 동일하지 않을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요구 가능함

사. 자격증 사본(자격기준이 되는 자격증은 필수제출, 그 외 선택사항) 1부

아. 최종학교 졸업증명서(또는 학위취득증명서)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1년 이내 발급본에 한함)

자.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 의견서 1부 [별지 제6호 서식]

차. 주민등록초본 1부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포함된 것]

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별지 제7호 서식]

타.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 제8호 서식]

파. 기타 본인의 능력을 표시할 수 있는 실적물 각 1부 [선택사항]

- 각종 증명서 등 입증자료는 사본으로 제출 가능함
- 외국어로 된 증명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

- 보수 및 복무는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공무원 연금법」, 「원주시 공무원 복무 조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이 적용됩니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에 따라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 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준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원본으로 제출한 증빙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탈락자가 요구할 경우에 반환이 가능합니다.
- 서류전형 합격자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시험 일자를 다시 정하여 재공고한 후 시험을 진행합니다. (재공고인 경우 추가 재공고 없이 다음 시험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당초 응시자는 별도 추가 원서접수 없이 기존 점수의 효력 인정)
- 면접시험 불합격 등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인원만큼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및 구비서류상 기재착오 및 누락·미비, 응시자 연락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추후 안내하는 면접등록 시간까지 면접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등록기간에 임용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임기제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영리업무가 금지되며,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자가 영리·비영리 업무에 종사하시기를 희망하는 경우 임용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복무 담당부서에 검직허가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본 공고의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별도 공고하며, 이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원주시청 총무과 인사팀 채용담당자(☎ 033-737-2225)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끝.